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0. 12. 24(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0년 12월 3일
- 다. 회부일자 : 2010년 12월 9일
-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15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

### 가.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2010.6.30)되어
- 근거법령이 없고 자문기능만 있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 3. 검토보고 요지

#### (행정문화전문위원 : 장용대)

이번에 폐지하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폐지조례안은 2006년 12월 6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1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근거하여 제정 조례안을 제출함.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12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의회 제25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현재까지 조례를 시행하였음.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고, 우리도에서는 관련법령을 근거로 2010년 6월 30일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 성장기본 조례가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환경분야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 녹색성장 위원회가 설치운영 되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 2010년 1월 13일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제정되면서 환경부장관 소속에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됨  
이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0조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 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방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체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지방추진계획, 재정, 법제도 및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 국토, 녹색건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관리 등의 분야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